

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2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3. 21.

제 출 자 : 고응종의원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6년 3월 29일,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제 획

1. 활동 목적

-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-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-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평창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
-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
-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- 2006년 3월 29일,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- 이만재의원, 고응종의원, 신교선의원, 심재국의원, 우강호의원,
김영해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 고
3. 29 (수)	제1차 조례특위 (10:00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.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.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.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. 평창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.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. 평창군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.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. 평창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12.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13. 평창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	